

3.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法 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4,235號 1994. 4. 3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지원사업

8.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대지의 매수사업

제6조의 제목 “(용자조건등)”을 “(토지관리사업등에 대한 용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용자) ①법 제6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공장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자금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 대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용자의 금리와 기간은 건설

부장관이 재무부장관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용자는 건설부장관과 용자대상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고, 용자신청·원리금상환 기타 용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제1항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주차장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종전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자금에 대하여 행하며, 그 용자조건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골자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의 개정(1994.1.7 법률 제4725호)으로 과밀부담금의 징수 재원의 일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용자대상사업을 공장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수도권내의 종전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사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94년은 성실시공 元年의 해